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2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1(목) 11:00	담당부서	산업기술개발과
담당과장	김홍주 과장(044-203-4520)	담 당 자	허희정 사무관(044-203-4505) 이충렬 사무관(044-203-4526)

'17년 산업부 연구개발(R&D)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

- 연차평가 · 연차협약 폐지,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 보장
- 연구역량 평가 강화, 연구자 · 평가자 이력관리 등 전문성 · 책임성 강화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주형환)는 12월 1일(목) 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 수행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**'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 전문가 간담회'를 열어, 「산업기술 R&D 제도(기획-선정-수행-평가관리) 개선방안」을 발표**했다.

< 산업 R&D 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>

- **(일시/장소)** 12.1(목), 14:00~15:30, 무역보험공사
- **(참석자)** 산업부 1차관, 연구개발(R&D) 전략기획단장,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, 산업기술진흥원장, 에너지기술평가원장, 산업부 연구개발(R&D) 수행 기업·대학·연구소 대표
- **(안건)** ① **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 제도 개선방안**
 ② '17년 산업부 소관 **연구개발(R&D) 규정 및 지침 주요 개정내용**

○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동 간담회에서 "이번 개선방안은 '추격형(Fast Follower)'에서 **'선도형(First Mover) 연구개발'**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(R&D) 혁신정책의 일환으로,

-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**기존 연구개발 제도·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도를** 높이고, **평가의 전문성·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** 위해 마련되었다."하고 설명했다.

【 가. 산업기술 R&D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】

□ 상기 개선방안은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규정개정을 통해, **'17년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**이며, **주요 개선방안 내용**은 아래와 같다.

□ **(기획)**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,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**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**한다.*

*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: ('13) 33% → ('15) 49% → ('17) 60%

○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**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**하고 공개함으로써, 과제기획의 **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**할 방침이다.

□ **(선정) R&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**인 **'연구자 연구역량'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**하기 위해, 평가배점을 상향(20→30점)하고,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(정성→정량평가)하여 체계화할 계획이다.

현행 평가지표(주관적 점수, 20점)
총괄책임자는 전문성 및 연구윤리가 적절한가? 참여연구진의 역량, 역할, 구성이 적절한가?
연구시설·장비 등 연구 인프라가 충분한가?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?
지재권 관리부서·인력을 보유하였나?

개선 평가지표(객관적 등급, 30점)

역량점수 = 과제수행이력+보유기술역량

S	A	B	C	D
30~24점	24~18점	18~12점	12~6점	6점 ↓

* (과제수행이력) 과제 난이도 + 최종평가결과 + 성과활용평가결과(사업화 중심)

* (기술역량) 특허등록·출원 수준/수 + 과제 연관성

○ 향후 연구역량을 **과제 난이도, 기존 과제 수행이력, 연구자의 자체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**하는 **'연구자 이력관리제'를 도입**하여,

-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함으로써, 연구개발(R&D) 성과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(수행)**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'관리·감독형 시스템'을 **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'수요자 중심 시스템'으로 전환**한다.

○ 먼저,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**'실태조사+연차평가'를 폐지**하고,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**워크숍 형태의 '연구 발표회'를 신설**한다.*

* 선진국은 연차평가 없이 워크숍·보고서를 통해 연구진행을 파악하고 과제수행 지원

- 이로써, **절차적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**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·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**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상담**하는 한편,

- 시장상황 및 기술 흐름 변화를 검토하여 해당 과제목표를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**목표변경(무빙타겟) 및 조기중단 제도도 활성화**하는 등 **연구수행 자체에 집중**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○ 또한, 매년 체결하는 **연차협약을 폐지**하고 **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**(4년 미만 과제 대상)**하는 방식을 도입**하여, **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**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.

- 연차평가·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과제 지속수행을 위한 **행정부담을 최소화**함으로써(현행 261쪽→15쪽 내외 자료작성), **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된다.

현 행	개 선
● 진도보고서: 20쪽 ● 연차보고서: 111쪽 (본문 50쪽) ● 차년도 계획서: 131쪽 ● 현장실태조사표/발표자료: 60쪽	● 진도보고서: X (진도점검 폐지) ● 연차연구보고서: 본문 15쪽 내외 ● 차년도 계획서: X (일괄협약) ● 현장실태조사표/발표자료: X* * 제출한 연차 연구보고서로 발표

<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 사례 (예시) >

❖ A 기업 연구소장은 '15.6월 산업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, 과제를 수행하던 중 '15.11월 과제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. 이를 위해 진도보고서, 진도점검조사표, 발표자료, 사업비 실적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기 위해 10여일을 행정처리에 매달렸다.

❖ '16.3월에는 연차보고서를 4월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. 주관기관으로서 A기업은 3월말까지 참여기관들로부터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받아, 111페이지 내외 연차보고서와 131페이지 내외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라 24일을 소요했다.

❖ 5월에는 현장실태조사, 연차평가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표와 발표자료를 준비했고, 이후에는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.

○ 아울러,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연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하여 **관리 중심의 연구개발(R&D) 제도·규정·서식을 대폭 간소화·개선**했다.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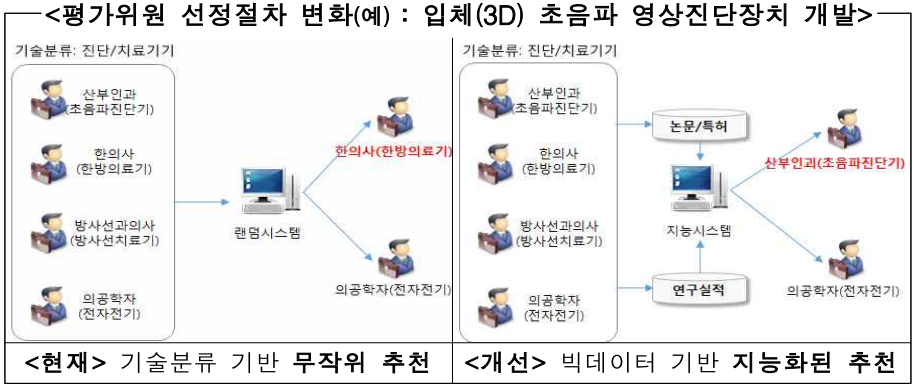
* 자세한 사항은 '나.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' 참조

□ **(평가)** 평가자의 연구분야·내용·실적 및 평가 참여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(DB)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**'평가자 이력관리제'를 도입**함으로써 **평가 책임성을 강화**할 방침이다.

○ 이를 활용하여 기존 '무작위 추천제도'를 **'빅 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'**으로 전환함으로써 **평가 전문성 역시 제고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이로써, 과거 공학과제(예: 입체(3D)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개발) 평가에 관련이 적은 의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례가 방지되고, 향후 평가위원이력관리를 통해 **연구내용과 적합성이 높은 평가자가 선정**된다.

<평가위원 선정절차 변화(예) : 입체(3D)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개발>



<현재> 기술분류 기반 **무작위 추천**	<개선> 빅데이터 기반 **지능화된 추천**

○ 또한, 선정-중간-최종평가를 거칠 때마다 평가위원이 달라 과제 관리의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**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**(과제당 2인)하여 **과제를 전담 관리**하게 함으로써, **과제관리 책임성도 강화**될 전망이다.

□ **(사후관리)**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 **후속과제 연계**(산업부-중기청 사업연계) 및 **총량제 면제** 등 **인센티브를 확대**하는 한편,

○ **부정사용 제재를 강화**(참여제한 최대 5년→10년)하고,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의 위험징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을 신속히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* 함으로써, **성과창출은 유도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은 억제**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.

* 집행패턴, 신용도 변화, 거래처관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활용하여 부정사용 위험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

【 나.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 】

1 연구 수행환경 개선

□ **수행기관의 연구환경 개선**을 위해 **산업부 연구개발(R&D) 규정이 대폭 개선**된다.

○ **'동시 수행과제 총량제'**는 중소·중견기업이 보유역량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**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**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예외없이 **일률적으로 적용**되면서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많았던 상황이다.

*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: 중소기업 3개, 중견기업 5개로 제한

- 이에 ①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(주관+참여)에서 **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**, ② **예비타당성 평가**를 통과한 **사업**과 **표준화 사업**은 총량제 **적용 제외**, ③ **우수성과 기업**에 대해서는 **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**하여 적용할 계획이다.

○ 참여연구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, 과도하게 낮은 참여율(5% 이내)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**방지**하기 위해 **'연구원 최소 참여율'을 20%로 제한하였던 것을 '17년부터는 10%로 완화**하여

- 연구원의 과제 내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**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**할 계획이다.

* 현재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에 참여시 일률적으로 20%씩 참여해야 하나,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는 60%로 참여하고, 지원하는 과제는 10%씩 참여가 가능

2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

□ 그간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**사업비 사용기준**을 수행기관의 자유로운 연구수행을 위해서 **대폭 완화**한다.

○ 먼저 수행기관 내부의 시험분석센터를 통한 시험분석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타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면서 소요되는 **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,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**

○ 대학 및 출연연 등 **비영리기관**은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**전문가 활용비 사용기준이 개선**되며,

- **대학**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교내 게스트 하우스 등 **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을 허용**하는 등 수행기관의 **다양한 불편사항**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**개선**하였다.

3 증빙서류 간소화 및 부실기업 관리 강화

□ 사업비 사용에 따른 **증빙서류도 간소화**되어 앞으로는 **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**하도록 완화되고, **택배비와 우편요금**은 정산 시 **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**된다.

○ 또한, **수행기관**이 시제품·시작품 등 **외부제작**을 의뢰할 경우 견적서와 계산서 외의 증빙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,

※ 현재는 외부제작 시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필요

○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와 관련성이 낮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.

* 제출서류: (개념계획서) 8종→4종(비영리 2종)/ (사업계획서) 10종→7종(비영리 4종)

□ 반면에 한계기업 등 **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**된다.

○ 현재 중소기업은 3개, 중견기업은 5개까지 가능한 총량제가 한계기업 등 **부실기업은 연구역량을 고려,** 각각 2개 및 4개로 **적용이 강화**된다.

* 한계기업 :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

○ 또한, 정상기업이라도 과제수행 중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

- **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** 진행중인 **과제를 중단**시키는 등 **부실기업에 대한 과제 관리가 더욱 엄격**해진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홍주 과장(044-203-4520), 허희정 사무관(044-203-4505), 이충렬 사무관(044-203-45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**산업기술 R&D 프로세스 개선방안 주요 내용**

1. 추진 배경

○ R&D 성과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**기존 R&D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**

- 이에, 1단계로 5대 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**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R&D 투자 구조조정**을 기 진행('16.4월)*

 * 신성장동력 분야 집중 투자 : ('16) 86.5% → ('17정부안) 92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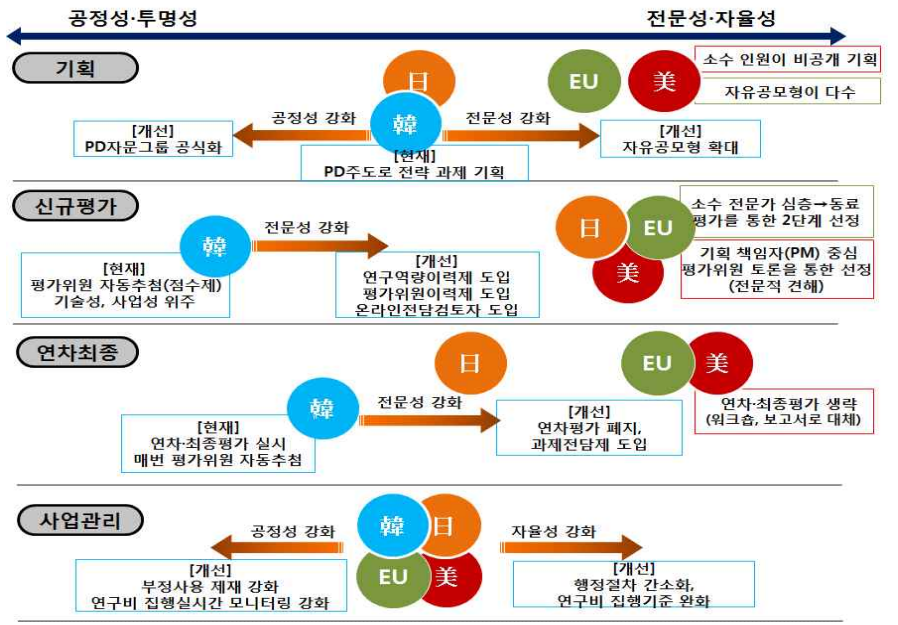
- 2단계로 **성과제고를 위한 R&D 프로세스 개선방안**을 마련

2. 개선 방향

① **자율성 보장**(연차평가 폐지, 절차·규정 간소화)을 통한 **연구몰입도 제고**

② **책임성 강화**(연구/평가자 이력제, 책임평가제)를 통한 **R&D 성과 제고**

<해외 사례와 비교한 R&D 프로세스 개선방향>



3. 주요 내용

구분	정부주도형 R&D 시스템 (기존 패러다임)	민간주도형 R&D 시스템 (新 패러다임)
기획	● Top-down(지정공모형) 중심 ● 과제기획 개방성 미흡	● Bottom-up(자유공모형) 중심 ● 과제기획 **개방성 강화**
선정	● 연구자 역량 주관적 정성평가	● **연구자 역량평가 확대,** 정량평가
수행	● 행정적·회계적 **관리형** R&D	● 절차·규정 간소화 등 **자율성 강화**
평가	● 평가자 무작위추첨 등 **공정성·형평성 중심**	● 평가자 이력관리/ 책임평가제 도입 등 **책임성·전문성 강화**
사후관리	● 성과확산 유인체계 부족 ● 징계적 연구비 관리	● 인센티브 확대 ● 부정사용 사전예방 체계/ 페널티 강화

1 (기획) 민간이 주도하는 과제기획 확대

○ **(자유공모형 과제 확대)** 정부기획 과제 비중을 축소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과제 지원을 확대

 *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: ('13) 33% → ('15) 49% → ('17) 60%

○ **(과제기획의 개방성 강화)** 정부과제 기획시,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 → 기획의 개방성·책임성 강화 및 셀프과제 방지

2 (선정) 연구자 연구역량 중심 선정

○ **(연구자 역량평가 강화)** R&D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연구자 연구역량에 대한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 → 생산성 제고 도모

- '연구역량' 평가배점 상향(20점→30점) 및 기존의 **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·체계적 지표로** 전환(정성평가→정량평가)

현행 평가지표(주관적 점수, 20점)
총괄책임자는 전문성 및 연구윤리가 적절한가? 참여연구진의 역량, 역할, 구성이 적절한가?
연구시설·장비 등 연구 인프라가 충분한가?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?
지재권 관리부서·인력을 보유하였나?

개선 평가지표(객관적 등급, 30점)

역량점수 = 과제수행이력+보유기술역량

S	A	B	C	D
30~24점	24~18점	18~12점	12~6점	6점 ↓

* (과제수행이력) 과제 난이도 + 최종평가결과 + 성과활용평가결과(사업화 중심)
* (기술역량) 특허등록·출원 수준/수 + 과제 연관성

3 (수행) 연구 몰입, 연구 자율성 강화

○ **(연구 자율성 강화)** 문제과제 예방을 위해 복잡하게 설계된 R&D 절차·규정을 간소화 →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 몰입도 제고

① **(연차평가 폐지)** 관리·감독형 '실태조사+연차평가'를 **워크숍 형태의 '연구 발표회**(progress review conference)'로 전환(연1회)

→ 발표시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변경(무빙타겟) 및 조기중단 적극 추진

② **(일괄협약 도입)** 매년 체결하는 협약을 총 연구기간에 걸쳐 **한 번만 체결**하는 방식으로 전환* →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 가능

* 4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단계협약

현 행	개 선
● 진도보고서: 20쪽 ● 연차보고서: 111쪽 (본문 50쪽) ● 차년도 계획서: 131쪽 ● 현장실태조사표/발표자료: 60쪽	● 진도보고서: X (진도점검 폐지) ● 연차연구보고서: 본문 15쪽 내외 ● 차년도 계획서: X (일괄협약) ● 현장실태조사표/발표자료: X* * 제출한 연차 연구보고서로 발표

③ **(규정 간소화)** 연구자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하여, **관리 중심의 R&D 규정 완화 및 절차 간소화***

* 사업비 집행규정 관련 타부처 규정과 통일, 제출서류 간소화 등

④ **(연구애로 개선)** 일률적 적용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던 **동시과제수행 총량제,* 인건비 가이드라인** 등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선

* 소수의 연구자만 존재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허용

4 (평가관리)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

○ **(평가자 이력관리제)** 평가자의 연구 분야·내용·실적 및 과제평가 참여 등을 DB화하여 체계적 관리하는 '평가자 이력관리제' 도입

→ 평가위원 이력정보를 활용하여, 기존 '무작위 추천제도'에서 **'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'**으로 전환하여 평가 전문성 제고

○ **(책임평가제)** 과제 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과제를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(과제당 2인) → 과제관리 책임성 제고

5 (사후관리) 성과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& 부정사용 제재 강화

○ **(인센티브 확대)** 우수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가점 위주의 소극적 방식에서 **후속사업 연계**(산업부-중기청 과제 연계) 등으로 강화

○ **(부정사용 제재 강화)**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**제재강화**(참여제한 최대 5년→10년) 및 부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

붙임 2 산업기술 R&D 규정 주요 개정사항

1. 추진 배경

○ 수행기관의 불필요한 **행정부담을 개선**하여 **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R&D 환경 조성**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 유도

- **연구현장**에서 제기하는 **불편사항**에 대해서 **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**하여 산업기술 R&D 규정 개정(안)을 마련

2. 개선 방향

① **수요자 입장에서 R&D 절차별로 검토하여 애로사항 개선**
② 부처별 **연구비 관리기준 통일** 및 **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**
③ **서식을 간소화**하고 불필요한 **서류제출은 대폭 축소**

3. 주요 내용

1 (연구환경 개선) R&D 절차별 주요 개선 사항

① **(총량제)** R&D 투자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**사업별 및 과제별 특성**을 **고려**하여 동시 수행과제 **산정기준 개선**

* **총량제 개선 사항** : ①수행기관 기준을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, ②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적용 제외, ③표준화 사업 적용 제외, ④ 혁신성과 기업 적용 완화, ⑤ 한계기업 적용 강화

② **(최소참여율)** 연구원이 **과제별 참여비중을 탄력적으로 결정**할 수 있도록 최소참여율 **기준 완화** (최소참여율 : (現) 20% → (改) 10%)

③ **(협약변경)**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 협약변경 사항 통보 시한 폐지 ((現)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→ (改) 상시 가능)

④ **(혁신성과 우대)** 연구수행능력 및 **성과중심의 우대가점으로 정비**

* 혁신성과 가점 : (現) 2점 → (改) 3점

- **혁신성과** 시 **성실수행 누적 건수 말소** 및 **총량제** 적용기준 **완화**

2 (사업비)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증빙 간소화

① **(전문가 활용비)**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대학 등 **비영리기관**은 내부 전문가 자문이 용이하도록 **사용기준 개선***

*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 전문가 활용이 가능

② **(시험분석료) 시험분석료 집행 허용기준**을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**비영리기관 시험분석센터로 확대**

- 또한,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에도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

③ **(타교학생 외부인건비)**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교류가 용이하도록 **타교학생의 과제 참여 허용**

④ **(대학내 부대시설 비용)**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회의실 및 게스트 하우스 등 **대학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허용**

⑤ **(과제수행기간 종료후 비용 집행) 과제수행 기간 종료 후**에도 **평가관련 비용**인 인쇄비, 여비 등을 **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**

⑥ **(내부인건비 증빙)** 대학, 출연연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갖춘 비영리기관은 보완된 **참여연구원 현황표만 제출토록** 증빙 간소화

* 現) 연구원 현황표, 급여명세서, 계좌이체증명 → 改) 급여 내역이 포함된 연구원 현황표

⑦ **(사업비 집행 증빙) 10만원 이하 회의비**는 내부결재나 회의록 없이 **영수증만 제출**하고, **택배비와 우편요금**은 **증빙서류 제출 면제**

3 (기타) 서식 간소화 및 징구서류 축소

① **(신규평가 제출서류)** 신규과제 신청 시 평가와 **연관성이 적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 면제**

* 개념평가 서류 : 8종→4종(비영리 2종), 사업계획서 평가 서류 : 10종→7종(비영리 4종)

② **(사업계획서)** 신청용과 협약용으로 이원화하고, **신청용**은 **평가에 필요한 내용**만 작성, **협약용**은 참여연구원, 사업비 등 **상세 자료** 작성

③ **(연차보고서)** 연구수행 현황 중심으로 **기존 대비 70%**(50p→15p) **축소**

붙임 2-1 **산업기술 R&D 규정 사항별 내용**

1 연구환경 개선

개정 사항	개정 사유 요약
○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위한 과제 산정기준 개선 * 현행 : 중소 3개, 중견 5개 (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,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)	○ 업종별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 기준 개선 * 예타 사업 제외, 주관기관 기준, 표준화 사업 제외, 혁신성과 기업 적용완화, 한계기업 적용 강화
○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(20%) 완화 (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,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, 사업비 요령 별표 4)	○ 연구원이 과제별 참여비중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참여율 기준 완화 * 최소참여율 : (現) 20% → (改) 10%
○ 혁신성과 창출 수행기관 등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(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)	○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R&D 환경 조성을 위해 R&D과제 수행결과 '혁신성과' 창출 시 누적된 성실수행 건수 말소 <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제도 현황>

구 분	영리기관		비영리기관
	과제 책임자	주관 기관	과제 책임자
성실수행(수)	2	3	2
참여제한 기간	3년	1년	3년

○ 신용등급 및 결산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 (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)	○ 신용등급 'BBB'에 'BBB+', 'BBB-'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 ○ '최근 결산기준'이 분기, 반기 또는 년도인지 모호하여 '년도' 기준임을 명확하게 명시 ○ 자본전액잠식 상태도 부채비율 500%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
○ 평가위원 제척 기준 완화 (공통운영요령 제7조제5항)	○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,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시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토록 제척기준 완화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표준지침(국과심, '15.3) 개정 :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
○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(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6조제4항)	○ 개념평가 후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3배수로 제한하고 있으나,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

	*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: (現) 3배수까지 → (改) 3배수 내외
○ 연구수행 능력 및 기술개발 성과 중심의 우대가점 제도 정비 (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)	○ 수행기관 선정시 가점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총 가점 상한을 하향하고, 가점도 성과 우대 중심으로 개선 - 사업별로 일부 상이한 항목별 가점 배점을 표준공고문에 일원화하여 운영 * 총 가점 상한 하향 : (現) 10점 → (改) 5점 * 혁신성과 : (現) 2점 → (改) 3점 * 여성 총괄책임자 : (現) 5점 → (改) 2점
○ 연차협약 폐지 및 평가절차 간소화 (공통운영요령 제32조,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9조 및 제36조)	○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기관의 연차별 협약 부담 완화 - 또한, '진도점검+실태조사+연차평가'를 컨설팅 형태의 연구발표회(1회/년)로 전환
○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'최초' 용어 정리 (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10항, 사업비요령 제12조제1항, 별표2)	○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로 달리 해석하여 혼란이 발생 수 있는 '최초'용어 정리 * 現) 특허대응전략을 최초협약 시점부터 2년 내에 → 改)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부터 2년 내에
○ 협약 통보 사항의 통보시한 폐지 (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항)	○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한 협약변경 사항 통보시한을 폐지 * (現) 협약종료 1개월전까지 → (改) 제한 없음
○ 계속과제 중단(성실) 판정기준 보완 (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7조제6항 제2호)	○ '중단(성실)' 판정기준에 해당연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기업 재무상태 악화로 성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포함
○ 정부 R&D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예약승계 제도 도입 (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8호, 협약서 첨부서류 신설)	○ 정부 R&D 성과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등을 위해 수행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예약승계 제도 도입을 의무화
○ 정부 R&D 성과물인 특허 등의 제3자 출원·등록 금지 (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항제4호)	○ R&D 성과물을 수행기관 외에는 출원·등록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※ 현재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특허 등록은 제한 중

○ 참여제한자를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조정 * 참여제한 :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(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14항)	○ 현재 참여제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행중인 과제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나, 향후 신규과제만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 - 다만, 수행기관은 참여제한 대상자가 수행중인 과제의 계속 참여 여부 검토를 의무화
○ 문제과제 제재 및 환수 처분 시 적용되는 규정 기준 명확화 (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3항)	○ 제재시 일반원칙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 규정을 적용하고, 해당자에 유리한 경우 처분시점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
○ 성과활용평가 실시 기준 통일 (공통운영요령 제40조,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4조) * 국연사 규정 내용으로 통일 ('15년도 산업위 결산검토보서 지적사항)	○ 국연사 규정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운영중인 성과활용평가 여부를 의무 규정으로 개선하고, 평가대상 기준도 통일 * (現)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조사·분석 등을 위해 평가를 할 수 있다. (改)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조사·분석 등을 위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.
○ '중단' 또는 '불성실수행' 과제의 경우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(공통운영요령 제40조)	○ 평가 결과 '중단' 또는 '불성실수행'으로 결정된 과제는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할 성과물이 없으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
○ 성과활용현황보고 표준 서식 마련 (공통운영요령 제40조2)	○ 성과활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용이토록 개선
○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가점 부여대상 조정 (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)	○ 성과활용 실적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대상 조정 * (現) 수행기관 전체 가점 부여 (改) 수행기업 및 총괄책임자 가점 부여
○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과제에 대한 감점 폐지 (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)	○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성과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성과활용평가 취지를 고려하여 최하위등급 과제에 대한 감점 폐지 * 현재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중

② [사업비]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증빙 간소화

개정 사항	개정 내용 요약
○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 완화 (사업비요령 별표4) *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	○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*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전문가 활용이 가능토록 개선 *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단위
○ 시험분석료 인정 기준 확대 (사업비요령 별표4, 별표5) *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	○ 비영리기관의 자체집행이 가능한 시험분석료 인정 기준을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서 발행 기관으로 확대 * 비영리기관에서 시험분석시설(센터)을 갖추고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한다면 시험분석료의 현금 집행이 가능토록 개선
○ 시험분석료의 수행기관 간 집행 허용 (사업비요령 별표4, 별표5)	○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에도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시설을 활용하여 시험분석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
○ 대학 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 허용 (사업비요령 별표4)	○ 대학의 경우 비용 집행이 필요한 회의장 및 게스트 하우스 등 부대시설의 사업비 집행허용
○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(사업비요령 별표3)	○ 신규과제 협약이 집중되는 기간은 연구지원 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가 많으므로, 협약 후 3개월 이내 자격취득자의 인건비도 소급하여 지급 * (現) 자격취득 시부터 인건비 인정 → (改) 협약 후 3개월 이내 자격취득 시 협약시점부터 소급 인정
○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 관련 비용 집행 인정 (사업비요령 별표4)	○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관련 비용인 인쇄비, 여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
○ 시간 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 변경 절차 간소화 (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12호 삭제, 사업비 요령 별표4) * 부처별 상이한 규정 일원화	○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을 협약변경의 승인사항에서 제외 * 변경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시 집행 확인
○ 연구비 유용 시 환수 기준 마련 (공통운영요령 제44조 별표2)	○ 원칙적으로 편취 및 유용 금액만 환수하고, 악의적인 경우 등은 전액 환수 추진 * 현재는 사업비 중 유용비중과 무관하게 대부분 전액 환수를 추진하여 행정소송이 과다하게 발생

○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의 범부처 일원화 (사업비요령 별표5) *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	○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 산정단가를 당해연도 급여총액 기준으로 개선 * (산업부)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 * (미래부) 당해연도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기준
○ 타교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(사업비요령 별표2) *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	○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교류가 용이하도록 타교학생의 외부인건비 집행 허용 - 다만,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 참여여부 점검
○ 개인사업체 대표의 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(사업비요령 별표2)	○ 전년도 종합소득세 등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* 개인사업자는 1)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또는 2) 소득이 없거나,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('15년 3,490천원, 고용노동부)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※ 미래부, 중기청 등의 부처에서 적용중이며, 우리부도 규정은 없지만 준용하여 적용 중
○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기준 일원화 (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) *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	○ 범부처 구매기준 일원화 구분 / 범용성 장비 / 범용성 소프트웨어 영리기관: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 비영리기관: 협약시 명시한 것과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경우도 인정 / 협약시 명시한 경우만 인정
○ 이월된 사업비의 사용범위 구체화 (사업비요령 별표2 및 별표4)	○ 이월금은 이월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혼란 방지
○ 기술도입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정 기준 마련 (사업비요령 제5조, 별표2, 별표4, 별표5)	○ 기술도입비 집행시 현물 및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 마련 * (현물) 기술도입비의 50%이내 * (현금) '기술도입비' 산정기준을 예시 → 단독항목으로 확대
○ 수행기관 보유기술의 기술임치 비용 집행 허용 (사업비요령 별표3)	○ 수행기관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집행 허용 ※ 기술임치 제도 :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인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이나 특허 논란 발생 시 해당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보유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

○ 내부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화 (사업비요령 별표5)	○ 대학,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급여명세서(월별) 및 계좌이체증명 서류제출을 면제하고, 참여연구원 현황표만 제출 - 다만, 참여연구원 현황표상에 각 연구원별의 급여정보 포함 필요
○ 외부제작비 증빙서류 간소화 (사업비요령 별표5)	○ 외부제작비 집행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을 면제 - 다만, 부정집행 등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
○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(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)	○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편요금 및 택배비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
○ 회의비 증빙서류 처리기준 개선 (사업비요령 별표5) * 부처별 규정 통일화 방안	○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내부결재나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여 증빙 간소화 * 산업부 : 금액에 무관하게 회의록과 영수증 증빙 제출 * 미래부, 복지부 등 : 10만원 이하는 영수증만 제출

3 서식 간소화 및 징구서류 축소

개정 사항	개정 내용 요약
○ 신규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 대폭 축소	○ 신규과제 신청 시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 면제 - 개념평가 제출서류 : 8종 → 4종(비영리 2종) - 사업계획서 평가 제출서류 : 10종 → 7종(비영리 4종)
○ 사업계획서를 신청용과 협약용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 작성내용 간소화	○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내용만 작성토록 하고, 협약 시 사업계획서는 참여연구원,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
○ 계속과제의 연차보고서 본문 분량 대폭 축소 * 연구발표회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	○ 과제수행 결과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비 70% (50p→15p) 대폭 축소 * 전담기관이 확인 가능한 재무현황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중복 내용 등은 삭제
○ 협약 시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준수서 제출 의무화	○ 수행기관의 연구비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부정사용에 따른 법적조치를 사전에 인지하도록, 연구윤리준수서 제출을 의무화